

kiri Weekly

2015.4.13 제328호

이슈

노후 난민화 가능성 검토와 향후 과제

글로벌 이슈

A.M. Best의 미국 보험산업 설문 조사 결과와 시사점
중남미 보험시장 진출 시 고려사항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노후 난민화 가능성 검토와 향후 과제

강성호 연구위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요약

- 급격한 고령화 및 장수화 과정에서 호모 헉드레드(Homo-Hundred)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서 2010년경 노인들의 고립사가 사회문제시 되면서 ‘노후 난민’이 향후 초고령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 약 20년의 시차로 일본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노후 난민은 비재무적 요인(사회적 단절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무적 관점의 노인 빈곤 문제와 차별화됨.
 - 대체로 65세 이상 인구가 30% 이상이거나 75세 이상 인구가 20%에 달하는 시기에는 ‘갈 곳 없는 고령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노후 난민이 양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됨.
- 일본은 그나마 공적연금 수급자가 많고 급여수준도 높아 상대적으로 부유한 노인이 많은 상황에서 노후 난민 문제가 인지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이 미성숙하고 노인 빈곤율도 세계 최고인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보다 좋지 못함.
 - 또한 높은 독거노인비율, 노인 자살률은 이미 노인의 사회적 고립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노후 난민화가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함.
- 따라서, ‘노후 난민’ 문제는 지금부터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중장년층에 대한 근로 및 복지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자리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함.
 - 노후 난민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의 교류를 강화함과 동시에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등이 중요함.
 - 고령화 위협이 커져가고 있고 이를 대응할 국가재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영보장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1. 검토 배경



- 평균수명 증가로 100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호모 헨드레드(Homo-Hundred) 사회에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1990년에는 평균수명이 80세를 넘는 국가가 없었으나 2000년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6개국(일본, 아이슬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으로 늘어났으며, 2011년 이후에는 25개국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¹⁾
 - 우리나라도 0세 기준 기대여명이 1970년 61.9세에서 2013년 81.3세로 증가하는 등 지난 43년 동안 연간 약 0.45세씩 늘어나 급격한 장수화를 경험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인류의 수명이 100세를 넘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에서는 이러한 고령화를 단순히 재무적 척도인 ‘노후 빈곤’에 그치지 않고 ‘노후 난민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됨.
-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이가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후 난민화’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노후 난민화의 정의와 일본에서 제기되는 노후 난민의 발생 원인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노후 난민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노후 난민화 개념 및 발생 원인



- 노후 난민화란 고령자가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의·식·주(醫·食·住)등 기본생활을 해나가지 못하거나 가족 및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일상생활에 커다란 곤란을 겪게 되는 상황을 총칭함.

1) OECD Factbook 2014.

- 대체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30% 이상이거나 75세 이상 인구가 20%에 달하는 시기에는 “갈 곳 없는 고령자 = 노후 난민”이 양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재무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인(사회적 단절 등)에 의해서도 노후 난민이 발생할 수 있음.
- 2010년 일본에서 노인들의 고립사가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노후 난민’ 문제가 제기되었음.
 - 유럽 선진국의 경우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가 상당히 증가하여 노후 난민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을 것이나 일본에 비해 고령화 속도 및 장수화가 상대적으로 늦음에 비해 복지수준이 강화되어 있어 일본에 비해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임.

■ 일본은 단카이(團塊) 세대 퇴직에 따른 무소득 고령층 증가, 무연사회(無縁社會)의 도래, 은퇴 후 생존 기간 연장 및 효(孝)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노후 난민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 1947~1949년 사이 출생한(806만 명) 단카이 세대(2012년 기준 566만 명)는 2012~2014년 사이에 모두 65세 이상이 되어 고령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일본 단카이 세대의 규모 및 비중

| 구분 | 출생 | 규모(비중) |
|----|----------------------|---|
| 내용 | 1947~1949년생(3년간 출생자) | 806만 명 출생, 2012년 10월 566만 명 (총인구의 4.4%) |

자료: 厚生労働省(2013), 人口動態通計(<http://www.e-stat.go.jp>).

- 또한 기존 고령자의 장수화로 후기고령층(75세 이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단순히 재무적 차원의 노후 빈곤 문제를 넘어 새로운 고령사회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2005년에 일본은 고령화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55년에는 40.5%가 될 것임.
 - 후기고령자로 일컬어지는 75세 이상 만으로 초고령사회가 되는 시점은 2030년으로 추정됨.

〈표 2〉 일본의 65세 및 75세 이상 인구 추이 및 고령화율

(단위: 천명, %)

| 연도 | 총인구 | 65~74세 | 75세 이상 | 고령화율1) |
|------|---------|--------------|--------------|--------|
| 2005 | 127,768 | 14,122(11.1) | 11,639(9.1) | 20.2 |
| 2020 | 122,735 | 17,162(14.0) | 18,737(15.3) | 29.3 |
| 2030 | 115,224 | 14,011(12.2) | 22,659(19.7) | 31.9 |
| 2045 | 110,443 | 15,937(15.9) | 22,471(22.4) | 38.3 |
| 2055 | 89,930 | 12,597(15.9) | 23,866(22.4) | 40.5 |

주: 1) 고령화율 = (65세 이상 인구/총인구) × 100 2) ()안은 총인구 대비 비율.
 자료: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フィデリティ退職投資教育研究所.

- 이런 상황에서 일본 내각부(2010)²⁾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일주일에 거의 이웃과 교류하지 않는 비율이 31.6%, 자녀와 거의 접촉하지 않는 비율이 18.1%로 사회적 유대 관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함.³⁾
 - 특히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하루 중 85%의 시간을 홀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임.

〈표 3〉 일본의 고령자 독신세대 구성비율

(단위: %)

| 연도 | 1989 | 1995 | 2001 | 2007 | 2013 |
|------|------|------|------|------|------|
| 독신세대 | 14.8 | 17.3 | 19.4 | 22.5 | 25.6 |

주: 세대 구조별로 본 65세 이상의 사람이 있는 세대수의 구성 비율의 연차 추이.
 자료: 후생노동성 平成25年 国民生活基礎調査の概況(2013)을 재구성함.

- 결국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화된 상황에서 단카이 세대의 퇴직과 후기고령층(75세 이상) 증가 등은 노인 빈곤율(2011년 일본 21%) 및 독신세대의 증가로 이어져 일본은 노후 난민화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음.

- 65세 이상 인구가 30%를 넘어서는 2020년 이후부터 노후 난민이 본격적으로 양산될 것으로 판단됨.

3. 노후 난민 시대 도래 가능성 검토⁴⁾



- 노후 난민화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재무적 요인), 사회적 단절에 따른 노인 생활 문제(비재무적 요인)와의 결합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점을 감안해 노후 난민 시대 가능성을 검토함.

- 따라서 재무적 관점에서는 ‘노인 빈곤’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인 고령화, 빈곤율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비재무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단절’의 대표적 형태인 부모부양 의식 약화, 독거노인 수 증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함.

2) 일본 내각부(2010), 平成22年度 第7回高齢者の生活と意識に関する国際比較調査結果.

3) 일본 내각부(2010)에서는 일본, 한국, 미국, 스웨덴, 독일 5개국에 대해 교류관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국 중에서 일본이 이웃 및 자녀와의 접촉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4) 노후 난민은 재무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인(사회적 단절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량적인 추정치를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가. 재무적 관점

■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2014년 12.7%(베이비부머 14.1%)로 고령화사회에 있으나, 2017년에 고령사회(14.3%)가 된 후 9년 만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20.8%)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임.

-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도달기간이 9년 정도로 일본 12년, 독일 40년, 영국 45년 등에 비해 매우 짧음.
- 특히 2014년 현재 65~79세는 10.1%, 80세 이상은 2.6%였으나, 2024년에는 각각 4.5%p, 1.8%p 상승하고, 2034년에는 각각 11.1%p, 3.8%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후기고령자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남(〈표 4〉참조).

〈표 4〉 베이비부머 및 고령자 추이

(단위: 천명, %)

| 구분 | 1994 | | 2004 | | 2014 | | 2024 | | 2034 | |
|---------------------|-------|------|-------|------|-------|------|-------|------|--------|------|
| | 인원 | 구성비 | 인원 | 구성비 | 인원 | 구성비 | 인원 | 구성비 | 인원 | 구성비 |
| 베이비부머 ¹⁾ | 7,430 | 16.6 | 7,257 | 15.1 | 7,112 | 14.1 | 6,881 | 13.3 | 6,206 | 11.9 |
| 고령자 | 2,542 | 5.7 | 4,166 | 8.7 | 6,386 | 12.7 | 9,834 | 19.0 | 14,325 | 27.6 |
| 65~79세 | 2,178 | 4.9 | 3,530 | 7.3 | 5,070 | 10.1 | 7,570 | 14.6 | 11,022 | 21.2 |
| 80세 이상 | 365 | 0.8 | 636 | 1.3 | 1,316 | 2.6 | 2,264 | 4.4 | 3,303 | 6.4 |

주: '베이비부머'는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사람임.
자료: 통계청, 2014 고령자 통계.

■ 이런 고령화 과정에서 노인 빈곤율(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07년 44.6%, 2009년 47.0%, 2011년 48.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의 3배를 초과하는 실정임.
- 반면에 OECD 34개국의 평균 노인 빈곤율은 2007년 15.1%, 2010년 12.8%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임.⁵⁾

5) OECD, Pension at a glance 2013.

〈표 5〉 고령세대의 상대적 빈곤율¹⁾

(단위: %)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고령인구(65세 이상) | 42.8 | 43.6 | 44.1 | 45.9 | 46.3 | 47.6 | 47.2 | 48.1 |

주: 전국가구(1인 및 농가포함)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 문제는 노인가구가 되면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율⁶⁾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노인 빈곤의 심화가 우려될 수 있음.
 - 실제 가구주 연령이 50~65세인 가구를 대상으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2011년 노후소득보장 패널 조사), 고소득층에서 2.4%, 중산층에서 25.4%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퇴직,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 노인의료비 증가 등에 기인함.

- 2012년 기준으로 평균 정년규정이 57.6세이지만 노동현장에서의 주된 일자리 퇴직은 이보다 3~4세가 빠른 53세에 이루어짐.⁷⁾
 - 특히 소득활동을 하는 60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월 급여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80.7% 수준 (55~59세에 비해서는 76.5% 수준)에 불과함.
- 국민연금제도(1988년 도입)는 충분한 가입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수급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급여는 매우 낮은 수준임.
 -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자(2014년 현재 61세 이상)의 월평균 수령액은 2014년 말 기준 월 33만 원(특례노령연금 제외)에 불과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최고 20만 원이며, 노인의 70%만 대상이어서 공적소득 보장기능이 매우 낮음.
- 또한 장수화 과정에서 유병기간 및 의료비 증가로 인해 그나마 축적된 노후자산이 부족하게 되어 노후가 더욱 궁핍해 질 우려가 있음.

6) '김미곤(2014),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시사점, 이슈엔 포커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5년에서 2011년 사이에 빈곤층으로 전락한 이동하거나 빈곤층에 머물러 있는 비중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0.6%는 고소득층에서, 13.1%는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였으며, 36.2%는 빈곤층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남.

7) 강성호 외(2013),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과 시사점」, KiRi Weekly.

- 장수화 과정(60→80세)에서 기대여명 대비 유병기간인 유병율은 증가하고(〈표 6〉 참조) 이로 인해 노인 의료비⁸⁾는 매우 높음.
- 한편, 의료문제뿐 아니라 자녀결혼 등⁹⁾으로 인해 퇴직 직전인 50대에 비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의 자산보유액은 약 22%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그림 1〉 참조).

| 〈표 6〉 기대여명과 건강기대여명(2012) (단위: 년, %) | | | | | 〈그림 1〉 연령대별 자산유형별 가구당 보유액 | |
|--|---------------|--------------|-------------|------------------|---------------------------|--|
| 연령 | 기대여명1) (A) | 건강 기대여명2) | 유병기간 (B) | 유병율 (B/A×100) | | |
| 60세 | 24.3 | 13.0 | 11.3 | 46.5 | | |
| 70세 | 16.0 | 7.5 | 8.5 | 53.1 | | |
| 80세 | 9.2 | 4.3 | 4.9 | 53.3 | | |

| 연령 | 저축액 | 전월세보증금 | 거주주택 | 거주주택이외 | 기타실물자산 | 합계 |
|--------|-----|--------|------|--------|--------|--------|
| 30세 미만 | ~ | ~ | ~ | ~ | ~ | 8,788 |
| 30~39세 | ~ | ~ | ~ | ~ | ~ | 23,115 |
| 40~49세 | ~ | ~ | ~ | ~ | ~ | 33,072 |
| 50~59세 | ~ | ~ | ~ | ~ | ~ | 43,025 |
| 60세 이상 | ~ | ~ | ~ | ~ | ~ | 33,660 |

주: 1) 기대여명: 특정연령 X세의 생존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연수
 2) 건강기대여명: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아프지 않은 기간
 자료: 통계청(2012), 생명표.

자료: 통계청, 2014 가계금융복지조사.

나. 비재무적 관점

■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은 심화되는 가운데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은 매우 약해서 가족으로부터 고립되어 생활하는 노인세대가 증가하는 실정임.

- 노부모에 대한 실제적인 부양책임이 자녀에서 정부·사회나 자신에게 전가되는 등 부양의식이 약해지는 추세임.
 - 통계청 사회조사결과(2002년~2014년)에 의하면, 노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책임의식이 70.7%(2002)→40.7%(2008)→33.2%(2012)→31.7%(2014)로 급속히 감소함.
 - 반면 ‘정부·사회의 책임’은 1.3%(2002)→3.8%(2008)→4.2%(2012)→4.4%(2014)로, ‘부모 스스로 해결’은 9.6%(2002)→11.9%(2008)→13.9%(2012)→16.6%(2014)로 증가함.

8)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하면 연평균 개인지출 의료비가 65세 이상 고령자는 약 91만 원으로 65세 미만의 약 39만 원에 비해 약 2.3배임.
 9) ‘김재호·송영남·전영준·김병덕·이윤경(2013), 베이비부머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한국노동연구원’에 의하면, 전체가구에 비해 베이비부머 부채증가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자녀 결혼자금(13.1%), 의료비(12.2%) 등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일본과 유사하게 독거노인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소외로 인한 노인 자살률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은 2008년 18.5%에서 2013년 20.4%로 5년 사이에 1.9%p 상승하여 연간 0.4%p씩 상승하는 추이를 보임.
- 이에 비례하여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000년 34.29명에서 2010년 81.9명으로 10년 동안 2.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표 7〉 우리나라의 독거노인 현황 및 추이

(단위: 천명, %)

|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전체 노인 수 (A) | 5,016 | 5,193 | 5,452 | 5,656 | 5,890 | 6,138 |
| 65세 이상 1인가구(B) | 931 | 976 | 1,056 | 1,124 | 1,187 | 1,25 |
| 비율(B/A) | 18.5 | 18.8 | 19.3 | 19.8 | 20.2 | 20.4 |

자료: 통계청, 「장래추계 인구·가구자료」.

〈표 8〉 노인 자살률 변화 추이

(단위: 인구 십만 명당 명)

| 연도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
| 노인 자살률 | 34.29 | 40.61 | 53.63 | 69.55 | 76.55 | 77.89 | 69.82 | 73.61 | 71.72 | 78.8 | 81.9 |

주: 노인 자살률=노인인구 십만 명 당 자살자 수
 자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다. 종합적 관점

■ 재무적 및 비재무적 관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노후 난민 시대의 도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됨(〈표 9〉 참조).

- 재무적 측면에서 보면, 낮은 공적연금¹⁰⁾ 비중과 조기퇴직¹¹⁾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하여 노인 빈곤율은 갈수록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비재무적 측면에서도 높은 독거노인비율, 노인 자살률은 이미 노인의 사회적 고립 현상을 보여주

10)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성숙으로 가입기간 증가로 인한 연금소득증대가 기대 되나 소득대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2028년까지 40%로 감소) 연금소득 증대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10년 미만 가입에 따른 미수급자(연금사각지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11)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지만, 노동시장에서 그대로 반영되지 의문이며 또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된다는 점에서 정년과 국민연금수급개시 간에 5년의 격차가 발생함.

고 있어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노후 난민화가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함.

■ 게다가 일본보다 재무적 및 비재무적 요인의 심각성이 크다는 점에서 일본에 비해 노후 난민 도래 속도도 빠르고 그 강도 또한 심각할 것으로 평가됨.

- 즉, 재무적 측면에서 보면,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장기적으로 다소 높으나 베이비부머의 공적연금 미가입자가 많고, 의무 정년연령은 5세정도 낮으며, 노인 빈곤율은 이미 일본의 2배 이상임.
- 또한, 비재무적 측면에서 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은 20.4%로 일본에 비해 양호하나, 노인 자살률은 일본의 4배 수준이어서 고령화 과정에서 노후 난민이 양산될 우려가 있음.
- 무엇보다 일본보다 고령화속도가 빠르고 단카이 세대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다가올 노후 난민의 도래 속도와 강도는 일본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됨.
 - 단지 고령화율이 현재 일본보다 낮고 아직 30%(65세 이상 기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노후 난민의 진입 조건을 거의 갖춘 상태임.

〈표 9〉 한·일의 노후 난민 발생 요인 비교¹⁾

| 구분 | | 한국 | 일본 |
|-----|-------------------------------------|--|---|
| 재무 | 중위소득 기준 공적연금 총 소득대체율 ¹²⁾ | 43.9%(2012) ※ 베이비부머의 공적연금 미가입률 35.8%(2010) ¹³⁾ | 37.5%(2012) ※ 개인단위로 기초연금을 의무가입하므로 단카이 세대의 미가입률은 낮을 것임(현재 모두 수급연령임) |
| | 조기퇴직 및 정년 | 현실적으로 53세부터, 2016년 이후 60세 정년의무 | 1994년 60세 정년의무화, 2013년 4월부터 65세로 연장 |
| | 노후 빈곤율 | 44.6%(2007), 47.0%(2009), 48.6%(2011) | 21%(2011) |
| 비재무 |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 | 20.4%(2013) | 25.6%(2013) |
| | 인구 10만 명당 74세 이하 노인 자살률 | 81.8명(2010) ¹⁴⁾ | 17.9명(2010) |
| 기타 | 고령화율 | 12.7%(2014), 32.3%(2040) | 23.1%(2010), 38.3%(2045) |
| | 고령사회→초고령사회 진입기간 | 8년(2018년→2026) | 12년(1994년→2006) |
| | 베이비부머 수 | 베이비부머 713만 명 (총 인구의 14.6%) | 단카이 세대 약 566만 명(총인구의 4.4%) |

주: 음영은 한·일간 노후 난민화를 촉진하는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함.

12) 'OECD, Pension at a glance 2013'은 각 국가별 공적연금 체계를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약 40년으로 하여 미래의 소득 대체율을 산출함. 현 근로세대를 중심으로 소득대체율을 산출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 있음.

13) 정경희·오영희·이운경·박보미(2011), 베이비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4)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9E%90%EC%82%B4.

4. 정책과제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일본에서와 같이 ‘노후 난민’의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으므로 고령화가 심화되기 전에 조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고령층의 ‘노후 난민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노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노후 난민’ 문제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중장년층에 대한 근로 및 복지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자리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2013년 추진된 정년연장의무화와 같은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정책이 잘 정착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단기적으로 청년실업 문제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후세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갈등을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둘째, 노후 난민의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의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사전·예방적 대처가 중요함.
 -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생활이 곤란한 고령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교류와 기회와 건강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지자체에서는 “안심 협력원(あんしん 協力員)”, “지역의 다방(地域の茶の間)” 등 서클 운영을 통해 노인들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고령화 위험이 커져가고 있고 이를 대응할 국가재정에 한계가 있으므로 민영보장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즉, 공적보장 시스템은 고령화와 저성장의 틀에서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민영보장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후 난민’ 문제와 같은 새로운 고령화 위험에 공사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야 할 시점임.
 - 이와 관련하여 노인의 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화는 노후 난민 문제를 대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클 것으로 기대됨. **kiri**